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30
----------	------

2026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나. 제출일 : 2026년 2월 9일
다. 회부일 : 2026년 2월 12일
라. 상정일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3월 1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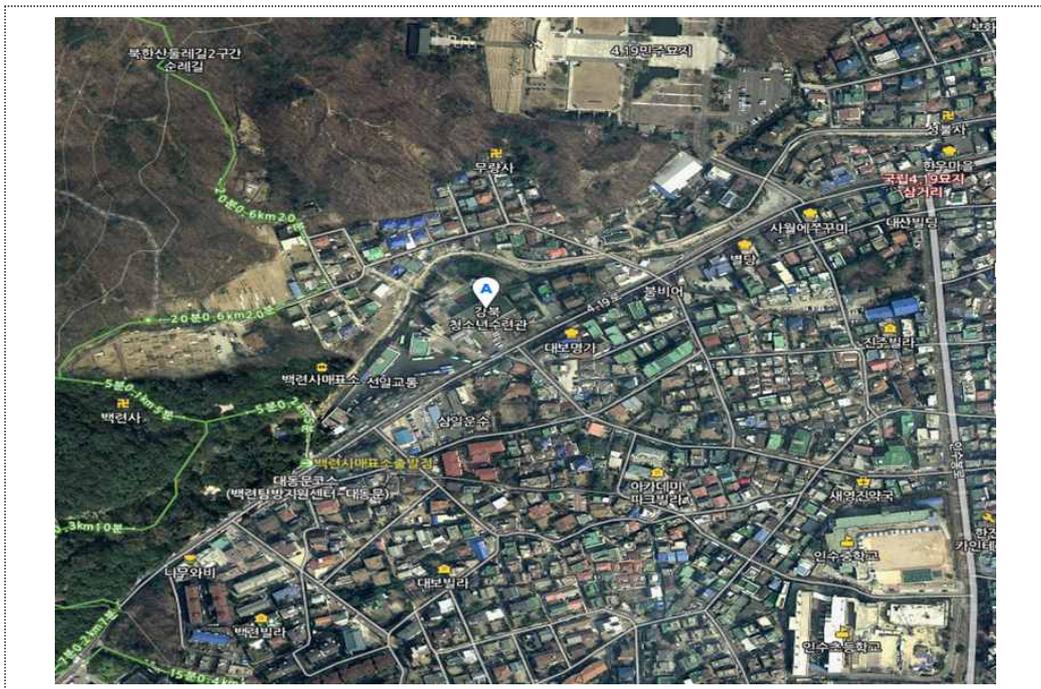
-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4.19로 74
- 개관일자 : 2001. 3. 10.
- 시설규모 : 대지 6,966㎡ / 연면적 6,409㎡
- 주요시설 : 퓨쳐랩, 미디어스페이스, 채움빌, 모두의운동장, 소극장, 수영장, 체육관, 인공암벽장, 숲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3년(2026.7.1. ~ 2029.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265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27백만원, 운영비 592백만원, 사업비 2,24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00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학)광운학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강북 청소년센터(이하 '강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6.7.1.~2029.6.30.) 본 센터를 새로운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4.19로 74
- **시설규모** : 대지 6,966㎡ / 연면적 6,409㎡
- **개관일자** : 2001. 3. 10.
- **주요시설** : 퓨처랩, 미디어스페이스, 채움빌, 모두의운동장, 소극장, 수영장, 체육관, 인공암벽장, 숲
- **위탁기간** : 3년(2026.7.1. ~ 2029.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265백만원(20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27백만원, 운영비 592백만원, 사업비 2,24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00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강북청소년센터는 2001년 개관하여, 2011년부터 15년간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이하 '광운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의 시설로, 현원 40명(정규직 24명, 계약직 16명, 2026.2.1. 기준)의 직원이 42억 6천 5백만원 (2026년)의 예산으로 9개 분야, 24개 사업, 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강북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 ('00.11.01.~'03.10.30.)	재단법인 대화문화아카데미	공개모집
2차 위탁	3년 ('03.11.01.~'06.12.31.)	재단법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재계약
3차 위탁	3년 ('07.01.01.~'09.12.31.)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공개모집
4차 위탁	1년 ('10.01.01.~'11.04.30.)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재계약
5차 위탁	3년 ('11.05.01.~'14.04.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공개모집
6차 위탁	2년 ('14.05.01.~'16.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재계약
7차 위탁	3년 ('16.07.01.~'19.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공개모집
8차 위탁	2년 ('19.07.01.~'21.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재계약
9차 위탁	3년 ('21.07.01.~'24.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공개모집
10차 위탁	2년 ('24.07.01.~'26.06.30.)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재계약

〈 강북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6.2.1. 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축탁직)
정원	28	28	1	1	1	3	4	7	6	3	2	-	-	-
현원	40	24	1	-	1	3	3	6	7	1	2	16	16	-

〈 강북청소년센터의 사업구성 〉

연번	분야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총계	9개 분야, 24개 사업, 73개 프로그램	
1	시설사용료	대관료수입, 주차장요금수입, 입장료수입 등	3개 사업, 4개 프로그램
2	교육문화사업	평생학습활동(창의력교실, 예능교실, 취미교실)	1개 사업, 3개 프로그램
3	생활체육사업	청년체육프로그램, 장애인체육활동, 특성화체육활동, 자조자영등	4개 사업, 13개 프로그램
4	목적사업	청년중점사업, 꿈지원사업, 마을연계사업, 드림메커사업등	4개 사업, 30개 프로그램
5	상담사업	상담지도사업(진로개인상담)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6	자본형성사업	기능보강사업(기능보강사업, 시설비 등)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7	보조금사업	기타공모사업,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인공암벽장운영 등	1개 사업, 4개 프로그램
8	기타사업	기타사업(기타사업운영, 채용빌 운영 등)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9	민간위탁사업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배치, 찾아가는청소년센터 등	8개 사업, 16개 프로그램

〈 강북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 예산	계	4,022,000	100%	4,265,000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677,936	41.7%	1,747,910	41%
		민간위탁사업비	200,000	5%	348,422	8.2%
	보조금	국비보조금	-	-	-	-
		시비보조금	9,000	0.2%	3,000	0.1%
		구비보조금	468,290	11.6%	391,701	9.2%
	사업수입	시설이용료 수입	1,563,408	38.9%	1,669,079	39.1%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	-	-	-
		이월금	26,796	0.7%	28,830	0.7%
		기타잡수입	76,570	1.9%	76,058	1.8%
세출 예산	계	4,022,000	100%	4,265,000	100%	
	인건비	1,229,923	30.6%	1,326,729	31.1%	
	운영비	597,202	14.9%	591,961	13.9%	
	사업비	2,093,325	52.0%	2,245,686	52.7%	
	사업외지출	38,000	0.9%	38,000	0.9%	
	예비비	40,220	1.0%	42,650	1%	
	지난년도지출	-	-	-	-	
	반환금	21,330	0.5%	17,974	0.4%	
	일반관리비	2,000	0.1%	2,000	-	
	이윤	-	-	-	-	
	부가가치세	-	-	-	-	

-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는 2024년도의 성과를 2025년 9월에 평가한 내용으로, 의회가 2026년 상반기의 강북청소년센터를 걱정하게 살펴보고,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적시성을 확보한 자료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강북청소년센터 운영평가 〉

□ 운영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및 전문조사기관[한국정보경영평가(주)]
- 평가기간 : 2024년도(실시기간 2025.3.~9.)
- 평가범위 : 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 평가결과 : 86.66점(100점 만점)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4.1.~12. 성과) 결과 외부위원 참여율 제고, 조직 내 인력 안정성 강화, 분기별 예산집행률 불균형, 시설 노후화, 성과 홍보전략 강화, 협력사업의 성과지표화 및 연계협력 역할 명확화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 사항 〉

- 연 1회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반영도 제고 및 일부 위원회(특히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에서 외부위원 참여율이 60%대에 머물러, 위원회 실질적 다양성·참여율 제고 필요
- 최근 2년간 이직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평가년도에 9명이 개인사유로 퇴사한 바, 일부 부서의 인력충원 지연, 업무가중 발생 등으로 조직 내 인력 안정성 강화 필요
- 인력배분의 탄력성, 전문직군의 지속적 확보 및 역량개발 지원 강화 필요
- 분기별 집행률 불균형 지속, 4분기 집행률이 120%를 초과하는 등 하반기 집중 현상 반복
- 공간 리모델링, 노후 시설 보수 등 연차별 시설 개선이 다소 느리게 진행돼 시설 노후화 문제 발생
- 우수사례의 대외 홍보·성과 확산이 내부 만족도에 그치는 경향, 전국적 확산·성과 홍보 전략 강화 필요
- 협력사업의 성과지표화, 역할 분담의 명확화, 주도적 네트워크 관리 역량 강화 필요

- 운영평가 결과에서 강북청소년센터의 최근 이직률 상승 및 퇴사자 증가로 인한 인력충원 지연, 업무가중 발생 등으로 조직 내 인력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 운영에서의 인력 안정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강북청소년센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이직률 상승 및 퇴사자 증가는 조직 내 인력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저해(업무공백 및 업무가중 발생, 전문성 약화 등) 하기에 퇴사 사유 분석, 이직률 관리, 장기근속 유도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강북청소년센터의 2024년 운영평가 결과(86.66점)는 최근 평가결과('22년 95.93점, '23년 88.38점)와 비교할 때, 해마다 점수가 하락(95.93점 → 88.38점 → 86.66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북청소년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 처리, 수의계약 관련 법령 등 미준수,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15년간 본 시설을 운영한 위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강북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액) 신고 오류	조치 완료
2024년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및 집행 관리 미흡	조치 완료
	노무비 전용 계좌 미사용	조치 완료
	수의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 미준수	조치 완료
2025년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시 개인정보보호 미흡	조치 완료

- 한편, 강북청소년센터는 2026년 기준 생활체육사업(청소년체육프로그램, 성인 체육활동, 특성화체육활동, 지도자 운영 등), 목적사업(청소년중점사업, 꿈지원사업, 마을 연계사업, 드림메이커사업 등), 민간위탁사업(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배치, 찾아가는 청소년센터 등) 등 9개 분야, 24개 사업, 73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2025년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상 최소 이용률인 6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강북청소년센터의 사업 실적 〉

(단위 : 명 / '25.11.30. 기준)

연도	계획	실적	달성률	청소년실적	청소년이용률
2024	434,827	478,221	110.0%	434,463	90.8%
2025	508,723	444,809	87.4%	404,083	90.8%

※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57p

<p>다. 이용자 관리</p> <p><input type="checkbox"/> 업무내용</p> <p>2) 청소년이용률 관리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의 <u>청소년이용률을 전체 이용자 대비 60%이상으로 유지</u>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함
--

- 자립형 시설인 강북청소년센터의 정원이 28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24명(현원), 비정규직(계약직)은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이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수탁기관이 운영비 절감 또는 마련을 위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평생교육국의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센터 중 자립형시설과 지원형 시설

- 구분 기준 : 수익시설(수영장 등)의 존재 유무
- 자립형시설 (14개소) : 문래, 목동, 수서, 노원, 강북, 구로, 성북, 마포, 은평, 성동, 금천, 망우, 동대문, 서대문,
- 지원형시설 (7개소) : 서울, 강동, 중랑, 창동, 광진, 화곡, 보라매

-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국이 청소년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경우, 위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저하, 부적정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리·감독 하지 못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만족도와 이용률이 감소할 수 있는바,
 - 적정수준의 지도·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분야에 최소한의 이해 또는 소양 등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되며, 청소년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추진 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30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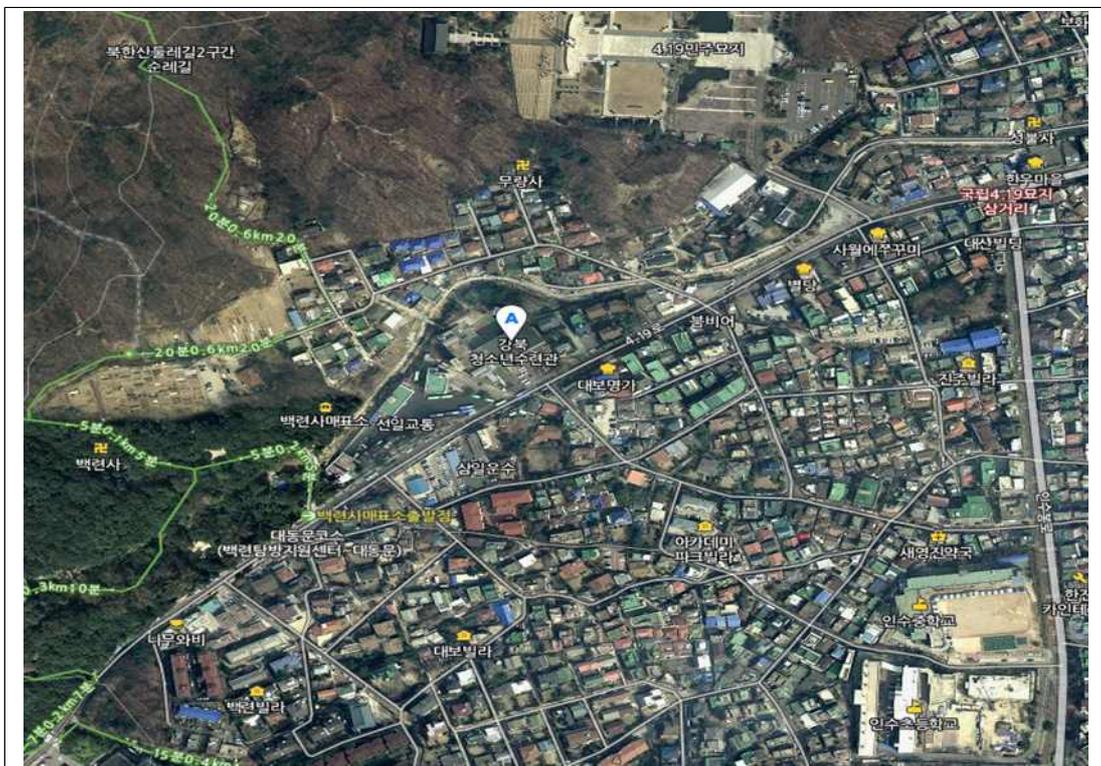
-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4.19로 74
- 개관일자 : 2001. 3. 10.
- 시설규모 : 대지 6,966㎡ / 연면적 6,409㎡
- 주요시설 : 퓨쳐랩, 미디어스페이스, 채움빌, 모두의운동장, 소극장, 수영장, 체육관, 인공암벽장, 숲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7.1. ~ 2029.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265백만원('26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27백만원, 운영비 592백만원, 사업비 2,246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00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장현주 (☎02-2133-4124)